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상훈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신정호, 노식래, 김정태, 김화숙,  
이경선, 안광석, 김제리, 고병국,  
임만균 의원 (9명)

## 1. 제안이유

주민참여에 기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주민공감대 형성,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으로서 희망지 사업, 거버넌스구축사업(후보지사업)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.

다만, 희망지와 후보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,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 및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하고,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)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, 거버넌스구축사업,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사전단계 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4조(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)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)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, 거버넌스구축사업,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사전단계 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